

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4. 5. 24 선고 2024가단1032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4. 26.

판 결 선 고 2024. 5. 24.

주 문

- 피고와 C ((주민등록번호 1 생략), 충북 옥천군 D) 사이에 충북 옥천군 E 대 311㎡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0. 3. 22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.
-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23. 7. 31. 접수 제76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가.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75415 양수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. 12. 26. '7,358,693원 및 이에 대한 2015. 12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'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. 위 지급명령은 C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9. 1. 15. 확정되었다.

나.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위 양수금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는 등 2024. 2. 15. 현재 원리금 19,334,210원 및 그중 7,358,693원에 대하여 2024. 2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.

다. 한편 피고와 C의 아버지인 망 F이 2020. 3. 22. 사망함에 따라 C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의 9분의 2 지분을 상속하게 되었는데,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20. 3. 22.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C의 위 상속분을 포함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따라서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, 제1항이 적용되어 자백이 간주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조진용